

##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1999. 4. 12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가. 제안이유

○ 우리 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전 구역이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 
상의 취락지역이 없어 현실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“동조례 폐지”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##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제 143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2

제출자 : 부천시장

폐지이유

- 우리 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전 구역이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역이 없어 현실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주요골자

- “동조례 폐지”

첨부

-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

부천시조례 제 호

###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